



## 장통조우 상업비밀침해죄 사건

# 21

국가   법원	청도시 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6)南刑二终字第4号
판결 일자	2006년 12월 15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상업비밀침해죄 성립, 권리자 승)
공소기관	청도시 시남구 검찰원		
피고인	장통조우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9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 응용의 약간의 문제 해석 제7조		
영업비밀	경영정보		
키워드 (Keyword)	비밀보호조치(保密措施), 벌금(罚款), 유기징역(有期徒刑)		

## 02 사건 개요

피해자 쩌왕공사는 1997년 설립되었고 한 차례 명칭 변경을 한 바 있다. 쩌왕공사는 2003년 초 홍콩 CKK 공사를 고객으로 응대하고 상품주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종류의 유리 촛대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쩌왕공사는 헤이산 공사를 찾아, 해당 상품을 생산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는 장통조우가 담당하였다. 쩌왕공사는 이와 같은 교역으로 2003년 말까지 74만 위엔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장통조우는 2004년 초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쩌왕공사를 떠났고, 쩌왕공사 근무 중 파악한 고객자료를 이용하여 룡니커 공사의 명의로 헤이산 공사에 대량의 동종 상품 주문을 하였다. 이후 헤이산 공사는 쯔브어커라이스 공사의 명의로 룡니커 공사의 상품을 홍콩 CKK 공사를 통해 수출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쩌왕 공사에 발생한 직접 손실은 1,317,718 위엔에 이른다.

이에, 청도시 시남구 검찰원이 피고인에 대해 상업비밀침해죄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원심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장통조우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 03 주요 쟁점

공소기관	⇔	⇐	피고인
CKK공사가 미국 월마트의 삼중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주문을 받은 사실 자체는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다.			CKK 공사 관련 정보는 이미 공중에 공개된 것이므로 비밀성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다.
영업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였다.			찐왕공사는 영업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타 합법적인 경로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			찐왕공사가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수출행위를 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은 합법성을 구비하지 않았다.

### 04 판결 요지

상소인 장통조우가 제시한 증거는 본 사건 피해자의 특정판매 경로, 판매 가격의 비밀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피해자 찐왕공사가 판매 등 관련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확히 직원에게 영업비밀(고객, 주문서, 상품을 포함) 보호를 요구하였음을 부인하지도 못하는바, 피해자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을 구성한다.

상소인 장통조우의 상소이유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 05 Key Point

형법 제219조 영업비밀침해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조성 하였을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형만 부과할 수도 있고, 침해행위로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6건의 영업비밀 관련 중국 형사 판례 모두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이 병과 되어 처벌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사법당국이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